

【체크카드 회원약관(개인회원용)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9조(카드이용의 제한) ① (생략)</p> <p>②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고신고 계좌 2. 법적 지급제한 계좌 3. 지급가능잔액(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) 부족 계좌 4.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. <u>기타 카드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p><신설></p>	<p>제9조(카드이용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u> 6. <u>회원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u>

현 행	개 정(안)
<p>제3조(카드의 관리)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,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</p> <p>② 카드의 소유권은 저축은행에</p>	<p>제3조(카드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, 관리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유효기한이 경과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,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전 각 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----- ----- 책임은 ----- ----- 귀속되며 저축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회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.</p>
<p>제15조(위·변조카드에 대한 책임) 위·변조된 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저축은행 등에 있습니다. 다만, 저축은행 등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<u>그러하지</u> 아니합니다.</p> <p>1.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. 카드의 양도,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</p>	<p>제15조(위·변조카드에 대한 책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회원이 <u>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</u>합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</p>